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487

발의연월일: 2021. 4. 14.

발 의 자:신정훈·윤재갑·주철현

김정호 • 이상헌 • 김원이

김두관 • 이수진 • 전용기

김경만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만연한 농지 투기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은 바로 누더기로 전락한 농지법에 있음.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임.

특히 주말, 영농체험이 꼼수로 활용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

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마저 요식절차로 전락한 현실임.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 팔기, 투기 등을 규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뒤 유예기간 동안 유실수 등을 심어 방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 년 기준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94.4만ha로 경지면적 대비 56.2% 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 이농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3년 내 처분을 의무화하며,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하여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농지 소유 및 이용 관리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립하고,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차명 투기 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써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 강화(안 제2조제3호)

나. 농지 소유 제한

- 1)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농업진흥구역 농지 취득 및 3인 이상 공유 취득을 제한함(안 제6조제2항제3호).
- 2) 농업경영 및 생존권 침해 우려시 농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 다. 상속, 이농 농지 등의 처분 제한
 - 1)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게 된 경우 3년 이내 처분을 제한함(안 제7조제4항).
 - 2)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 4) 상속, 이농 농지의 소유 상한 초과 시 3년 이내 처분을 의무화함 (안 제10조제1항).
- 라. 농지상속의 신고(안 제7조의2 신설)
- 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요건 강화
 - 1)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안 제8조제2항), 거짓 제출 시 과태 료 500만원을 부과함(안 제63조제1항 신설).
 - 2) 투기우려 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제22조의4 신설).
- 바. 농업경영계획서의 준수 및 농지 분할 처분 금지(안 제8조의3 신설)
- 사. 농지 불법 취득 중개 금지(안 제8조의4 신설)

- 아. 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관한 특례(안 제8조의5 신설)
- 자. 농업법인의 금지행위 및 과징금 부과(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 차. 농지위원회의 설치(안 제22조의4 신설)
- 카. 임차료 제한(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 타. 전수조사 실시(안 제31조의4 신설)
- 파.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안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 하.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안 제62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을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2"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취득 및 3인이상의 공유 취득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상한"을 "상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자기의농업경영에 이용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부는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⑥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농지 소유의 상한 및 처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농지상속의 신고) 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을 9개월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제 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지정되 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제1항의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

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을 "시·구·읍·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을 "제6조제2항제1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작성하여"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제2항제2항제2호·제3호·"을 "제6조제2항제2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의4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농업경영계획서의 준수 등) ① 제8조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그 농업경영계획서 를 준수하여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분할하여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농업경영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4(농지 불법 취득 중개 금지) 누구든지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하도록 중개하거나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의5(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관한 특례) 「부동산 실권 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의 소유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46조를 준용한 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를 "초과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

- 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 소유자는 매년 성실 경작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작이행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경작 여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농지이용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방법·절차,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을 "농지는"으로 한다.
- 제3장제1절에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농업법인의 금지행위 등) ① 농업법인은 영리 목적으로 농

- 지를 매매 또는 중개하거나 대가를 받고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농업법인이 제1항에 따른 사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 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 제22조의3(과징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 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농지를 매 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임대한 자에 대하여 그 양도 차액 또는 임대 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4(농지위원회) ①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농지위원회를 둔다.
 - ②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의
 - 2. 농지이용실태조사 참여
 - 3. 투기나 부정한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는지 여부 심사
 - 4.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처분명령을 위반한 농지 이용 및 전용 여부
 - 5. 농지 불법 전용 여부 심사
 - 6. 농업경영의 이용 및 자경 여부 심사

- 7. 공익직접지불금 부정 수령 여부 심사
- 8. 임차료 상한 초과 여부 심사
- 9. 농지처분 유예대상 여부 심사
- 10. 기타 농지 관련 분쟁 심사
- ③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농지 취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농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 4. 농업인회의소
- 5. 농지와 관련된 시민단체
- ④ 그 밖에 농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4호부터"를 "제6호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를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기간"을 "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차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농업생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4(전수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든 전, 답, 과수원 필지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전수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불법소유 및 이용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으로의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출자자 구성, 운영 현황,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단기간 매매, 통작거리 등 투기로 의심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
- 2.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

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제5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 또는 중개하거나 대가를 받고 임대한 자

제5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농지의 불법 취득을 중개하거나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 상사용하게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중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를 "토지가액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3조(과태료)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의 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5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의 소유권을 타인 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3조(전수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	3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	
조에 따라 설립되고 <u>업무집행</u>	<u>농업인이</u>
<u>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u> 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을 말한다.	초과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자
	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권을
	<u> 가진 자 중 3분의 2</u>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 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 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 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 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 지를 소유하는 경우

4. ~ 10. (생략)

③ • ④ (생 략)

제7조(농지 소유 <u>상한</u>) ① ~ ③ 저 (생 략)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신 설>

3
-1 A /1 Al -11 Al
<u>경우(농업진흥지역</u>
의 농지 취득 및 3인 이상의
공유 취득은 제외한다)
4. ~ 10.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7조(농지 소유 <u>상한 등</u>)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
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
게 된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자
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다.

⑤ 정부는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 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⑥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 는 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 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 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 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농지 소유의 상한 및 처분 방 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농지상속의 신고) ① 제 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으 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상속개 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 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 아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 또 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을 9개월 이 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 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 거나 선임되는 경우로 한정하 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 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기한까지 상속인이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 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 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 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 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 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 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 계를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u>두지 아니한 시의</u>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 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 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 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02(0/11/1/1000)	근 ㅁ /
①	
	<u>시·구·</u>
<u>읍·면의 장</u>	
,	

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
 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2.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 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 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1. <u>제6조제2항제1호·</u>
작성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u>제6</u> 조제2항제2호·
1. ~ 3. (현행과 같음)
③ 시·구·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
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

<신 설>

③·④ (생 략)

<신 설>

으려는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 독자격증명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의4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⑤</u>・<u>⑥</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8조의3(농업경영계획서의 준수등) ① 제8조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그 농업경영계획서를 준수하여 해당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하며, 해당 농지를 분할하여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업경영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

<신 설>

<신 설>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 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 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 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 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4(농지 불법 취득 중개 금지) 누구든지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 여 농지를 취득하도록 중개하 거나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 소에 대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5(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 구 금지에 관한 특례) 「부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의 소 유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민 법」 제746조를 준용한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 다. <단서 신설>

- 1. ~ 5의3. (생략)
-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 6. -----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8. (생략)
- ② (생략)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 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 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u>다</u>
만,	제63	호에	해덕	강하게	되두	면	コ
사	유가 '	발생 '	한 닐	날부터	3년	o`	내
에	해당	농기	이를	처분:	하여여) ;	한
<u></u> 다.							

- 1. ~ 5의3. (현행과 같음)
- ----초과한 농지를 자기의 농 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 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삭 제>

- 8.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 ③ (생략) <신 설>

<신 설>

-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 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 하지 아니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명 령이 유예된 농지 소유자는 매 년 성실경작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작이행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실경작 여부를 매년 확인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 게 할 수 있다.
- 제19조의2(농지이용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 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 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 (생략)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② 농지는-----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 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1. ~ 4. (생략) <신 설>

<신 설>

과를 상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방법·절차,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농업법인의 금지행위 등) ① 농업법인은 영리 목적 으로 농지를 매매 또는 중개하 거나 대가를 받고 임대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농업법인이 제1항에 따른 사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 하거나 1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제22조의3(과<u>징금)</u>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

<신 설>

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 의2제1항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임대한 자에 대하여 그 양도 차액 또는 임대료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 액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2조의4(농지위원회) ①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 장 소속으로 농지위원회를 둔 다.

- ②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의
- 2. 농지이용실태조사 참여
- 3. 투기나 부정한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는지 여부 심사
- 4.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처 분명령을 위반한 농지 이용

및 전용 여부

- 5. 농지 불법 전용 여부 심사
- 6. <u>농업경영의 이용 및 자경 여</u> 부 심사
- 7. 공익직접지불금 부정 수령 여부 심사
- 8. 임차료 상한 초과 여부 심사
- 9. 농지처분 유예대상 여부 심 사
- 10. 기타 농지 관련 분쟁 심사
- ③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농지 취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농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 3.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인
- 4. 농업인회의소
- 5. 농지와 관련된 시민단체
- ④ 그 밖에 농지위원회의 구성

-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제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제6조제2항제1호·<u>제4호부터</u> 제9호까지·제9호의2 및 제10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2. ~ 6. (생략)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4000 = F 70 2 9.
]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①
<u>.</u>
1제6호부터-
2. ~ 6. (현행과 같음)
7
_
가
제7조
<u>제1항에 따라</u>
1]
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토러러 0 근 저하다

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 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 9. (생략)

② (생략)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 ④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등) ① ~ (생 략)

<신 설>

<신 설>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u>제</u> 7조제2항
에 따라	

- 8. 9.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 ④ (현행과 같음)
 - ⑤ 임차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연간 농업생산액의 100분 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1조의4(전수조사 등)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모든 전, 답, 과수원 필지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 ② 전수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 결 과에 따른 불법소유 및 이용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으로 의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농지의 소유·거 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검사하 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③ (생 략)

제57조(벌칙) ① <u>농업진흥지역의</u> 조 <u>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u> <u>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u> <u>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u> <u>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u> <u>를 받은</u>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

만, 제1호에 대해서는 출자자
구성, 운영 현황, 농지의 소유·
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단
기간 매매, 통작거리 등 투기로
의심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실태
를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u>있다.</u>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u>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 [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 ②·③ (생 략)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

 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

 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

-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 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2.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세58조(벌칙)

	_		-	-	_	-	_	_	-	_	-	-	-	-	-	-	-	-	-

<u><삭 제></u>

<u>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u>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신 설>

2. ~ 4. (생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u>1. · 2.</u> (생 략)

<u><신 설></u>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영리 목적으로 농지를 매
매 또는 중개하거나 대가를
받고 임대한 자
2. ~ 4.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u>.</u>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농지의
불법 취득을 중개하거나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
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u>2. ⋅ 3.</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59조의2(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
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
 <삭 제>

 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한 자

3. (생략)

제6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 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신 설>

3. (현행과 같음) 제62조(이행강제금) ①
<u>토지가액</u> 코 「가정되기 미 가정되기시에
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u>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u>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
은 자가 그 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해당 농지의 토지

② ~ ⑧ (생 략)

<신 설>

가액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장제금을 부과한다.

③ ~ <u>⑨</u> (현행 제2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제63조(과태료)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